

<별표 1> (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)

선거운동 허용 및 금지 사항

구분	적용 방법		비고
	허용	금지	
선거사무소 설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○ 선거사무소에 한하여 간판·현판·현수막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방법 불가 ○ 유력인사 원본 사진 조작·수정하는 등의 방식 현수막 게재 불가 ○ 선거연락소 개설 불가 ○ 선거사무소 개소식 불가 ○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·현수막 설치 불가 	
명함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함배부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규격 : 길이 9cm×너비 5cm(하트·원형 등 규격 안에서 제작 가능) -내용 : 성명·사진·전화번호·학력·경력·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○ 배부가능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입후보자(회장 및 부회장 후보) -입후보자의 배우자 -지지자 2인 ○ 학교방문 회원에 직접 배부 허용 ○ 온·오프라인 배부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본사진이 아닌 합성사진 게재 불가 ○ 선거사무소비치, 문틈·차량에 꽂아 두기·우편함투입·호별방문 배부 불가 ○ 안경달이, 거울 등 다른 용도 제작 불가 ○ 학교방문 명함 배부 시 회원 전체 모임을 주선받거나, 회원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정견을 발표하거나 인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 ○ 배부가능자 외 배부행위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원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으므로 학교 분회, 시도·시군구 행사, 교육유관기관 행사 방문 후 교총회원에 대해 직접 인사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가능 ○ 명함 내용 중 학·경력 위조 시 엄정 조치(등록무효, 당선무효 등)
홍보물 제작·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·오프라인 홍보물 제작·배부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용 : 성명·사진·학력·경력·공약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합·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일전에 각 분회로 일괄 배송됨.

구분	적용 방법		비고
	허용	금지	
온라인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 홈페이지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카페, 블로그, 밴드 등 개설 후 선거운동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권자에게 유료 서비스 무료 제공 불가 ○ 특정 단어 입력하면 후보자의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에 자동 접속되는 행위는 불가 ○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교충이나 후보자에 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불가 	
전자우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우편, 회원대상 후보별 2~3회 교충에서 일괄 발송 ○ 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인사에 대해 전자우편 발송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공지 -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 소명 가능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정보 전송 불가 ○ 불법으로 불특정 회원의 이메일주소를 수집해, 발송하는 행위 불가 ○ 공공 네트워크(교육청 메신저 등) 등을 이용하여 교원에게 쪽지,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거운동기간내 과도한 전자우편 발송으로 회원들의 심한 불쾌감 유발 ○ 소명불가능한 정보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높아서 법적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음.
문자 메시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자메시지, 회원대상 후보별로 교충에서 일괄 발송 ○ 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 안 인사에 대해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공지 - 수신이 가능한 전화번호 공지 -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 소명 가능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법으로 불특정 회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해,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거운동기간내 과도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회원들의 심한 불쾌감 유발 ○ 소명불가능한 정보 수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높아서 법적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음.
전화통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송·수화자간 1:1 직접 통화 방식 가능 ○ 후보자 및 지지자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 범위안 인사에 대해 직접 통화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신자 동의 묻지 않고 자동 음성 정보에 연결하는 행위 불가 ○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시간(오후 10시부터 다음날 8시) 불가 	

구분	적용 방법		비고
	허용	금지	
인터넷 광고	○ 교총 선거분과위 주관하에 한국 교총 공식홈페이지·한교닷컴·선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홍보 (선거분과위원회에서 별도 공보 자료 요청해 검토한 후 게재 예정)	○ 개별적 광고 불가	○과도한 선거비용 발생 방지
여론조사		○ 여론조사 전면 불가	
언론 광고이용	○ 교총 선거분과위 주관 하에 한국 교육신문 2~3차례 일괄 공보 시행	○ 일간지, TV라디오 등 언론에 개별적 광고행위 불가	○과도한 선거비용 발생 방지
어깨띠 사용	○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나 표지물, 잇옷(5만원 이내) 착용 허용 - 입후보자를 포함하여 20명이내 착용 허용 - 표지물 규격 : 길이 100cm, 너비 100cm이내	○ 어깨띠나 표지물, 잇옷을 제외한 모든 물품 착용 불허	
현수막		○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 전면 불가 ○ 선거사무소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·현수막 설치 불가	
방송연설	○ 교총 선거분과위 주관 하에 자체 후보자 동영상 촬영 후 한국교총 선거홈페이지 등에 게재 ○ 후보자합동연설회의 경우 선거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별도 실시 가능	○ 개별적 방송연설 등 불가	○ 회장 후보자만 별도 촬영(교총 선거예산으로 촬영. 사전 시간 및 촬영 횟수 등 정해서 공지)
기타사항	○ 정관시행세칙 제42조 제3항에 의거 허위사실이나 타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음 ○ 이상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선거운동 허용·금지 유무는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.		